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893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0.

발 의 자 : 윤미향 · 강민정 · 박 정

양이원영 · 용혜인 · 윤영덕

이성만 • 이수진(॥) • 조정훈

진성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2020년 6월 동물복지단체(Compassion in World Farming)가 주최한 행사에서 "야생 동물과 가축에 대한 무례함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 발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"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,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 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 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,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·보 완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 등, 안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등록과"를 "허가와"로, "등을 보전·연구하고"를 "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·연구하며"로, "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"를 "제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"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"국민들에게"를 각각 "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에게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등록 등)"을 "(허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
- 2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 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을 보 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

- 3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,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및 안전관리
- 4.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
- 5. 휴·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등록의 취소)"를 "(허가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"를 "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등록을"을 "허가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등록한"을 "허가를 받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등록요건"을 "허가요건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검사관) ①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.

- 1.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 물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
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
- 3.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 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- 4. 야생동물 또는 해양생물의 보호·보전,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5.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·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②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·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,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의4(동물윤리위원회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은 동물윤리위원회(이하 "동물윤리위원회"라 한다)를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동물윤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득, 전시, 연구 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수의 학적 처치, 복지실태의 점검, 서식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한다.
 - ③ 동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위촉한다.
 - 1. 수의사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 - 2.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 - 3.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

람

⑤ 그 밖에 동물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- 1.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복지 실태
- 2.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
- 3.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
- 4.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
- 5. 동물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

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"입히는"을 각각 "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
- 6.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
- 7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

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3조제1항 각 호의 현황 및 변경내역

제12조제1항제1호 중 "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"를 "허가요건과"로 한다.

제15조 중 "등록을"을 "허가를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"를 "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"를 "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"고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7조제4호"를 "제7조제4호·제5호 또는 제7호"로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
- 2의2.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동물위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

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원 및	제1조(목적)
수족관의 <u>등록과</u> 관리에 필요	<u>허가와</u>
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	
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	<u>는</u>
<u>등을 보전·연구하고</u> 그 생태와	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·
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	<u>연구하며</u>
민들에게 <u>제공하며 생물다양성</u>	
<u>보전에</u>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	제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
다.	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
	<u>경 조성에</u>
	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<u>.</u>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	<u>.</u>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	1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<u>국민</u>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<u>국민들에게</u> 전시·교육을 통해 야	1 <u>생</u> <u>생</u> 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<u>국민들에게</u> 전시·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	1 <u>생</u> <u>생</u> 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<u>국민들에게</u> 전시·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	1 <u>생</u> <u>생</u> 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동물원"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·증식하거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함으로써 <u>국민들에게</u> 전시·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	1 <u>생</u> <u>생</u> 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

나 그 생태·습성을 조사·연구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·교 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 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.

3. ~ 5. (생략)

- 제3조(등록 등) ① 동물원 또는 제3조(허가 등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다. 다만, 제3호 및 제5호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.
 - 1. 시설의 명칭
 - 2. 시설의 소재지
 - 3. 시설의 명세
 - 4. 시설 대표자의 성명·주소
 - 5. 전문인력의 현황
 - 6.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 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
 - 7.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

<u>생물다양성을</u>	보
전하고 국민들에게	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다음 |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| 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
- 1.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
- 2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(「해양생

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 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2조제11 경 제공 및 안전관리 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 한다) 및 그 개체 수의 목록

- 8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계획, 적정한 서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식환경 제공계획, 안전관리계 획, 휴·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
-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<u>라 등록한 동물</u>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

고 있는 멸종위기종(「야생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을 보 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

-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 3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, 적정한 서식환
 - 4.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
 - 5. 휴·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 리
 - 는 사항
- ②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|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하여야 한다.

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

 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

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등록의 취소) ① 시·도지사 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 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- 2. 제3조제1항에 따른 <u>등록요건</u>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등록증을 시·도지사에 반 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4조(허가의 취소) ①
<u>허가를</u> 취소하거나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
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
<u>명할 수 있다</u>
<u>허가를</u>
1
<u>허가를 받은</u>
2허가요건
3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제4조의3(검사관) ①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교육을받은 사람을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들을 수 있다.

- 1.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 보전·사육·연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 람
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 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
- 3.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 는 사람
- 4. 야생동물 또는 해양생물의 보호·보전, 복지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

환경부와해양수산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

- 5.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·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 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 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②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·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,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 제4조의4(동물윤리위원회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규

<신 설>

모 이상의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은 동물윤리위원회(이하 "동물 윤리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 영하여야 한다.

- ② 동물윤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득, 전시, 연구 등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수의학적 처치, 복지실 태의 점검, 서식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- ③ 동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위촉 한다.
- 1. 수의사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2.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4항 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

및 휴·폐워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신 설>

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 람

3.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 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

⑤ 그 밖에 동물원윤리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제5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·폐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 개)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.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 로 공표하여야 한다.

제7조(금지행위) 동물원 또는 수 제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(생략)
- 2. 도구·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 해를 <u>입히는</u> 행위
- 3. 광고·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 리거나 상해를 <u>입히는</u> 행위
- 4. (생 략)

 <신 설>

1.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
복지 실태
2.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
한 평가 결과
3.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
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
4.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
의 운영 현황
5. 동물윤리위원회의 구성 및
<u> 운영 현황</u>
]7조(금지행위)
1. (현행과 같음)
2
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
<u> </u>
3
입히거나 신체
<u>적 고통을 주는</u>
4. (현행과 같음)
5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

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

<신 설>

<신 설>

2. (생략)

제9조(운영·관리 기록유지 및 보 전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

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

- 제12조(조치명령) ① 시·도지사는 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		동을	강요ㅎ	하는	행위	=		
	<u>6</u> .	제3	조제1	항에	叫	른	시설	로
		허가병	받지 여	아니	한 시	설이	ll서	동
		물을	전시	하는	행위	_		
	<u>7.</u>	관림	남을 도	극적 으	그로	동물	을을	<u>만</u>
		<u> 지고</u>	먹이-	를 주	도토	를 궁	누는	행
		위						
1	9.	조(운	영·관i	의 기	록유	-지	및	보
	콥	<u>-</u>)						
	_							
	_							
	1.	제33	조제1호	항 각	호	의 현	변황	및
		변경١	H역					
	2.	(현	행과 집	같음)				
1	12	2조(조	스치명 [:]	령) (<u> </u>			
	_							
	_							
	_							
	_							
	_							
	_							

- 2. ~ 4. (생 략)
- ② (생 략)
-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

 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

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

 하여 제출한 자
 - 2.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
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
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

<신 설>

- - 1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</u> 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 고를 한 자
 - 2. -----<u>허가 또는 변</u> <u>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</u> <u>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</u>----
 - 2의2.
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

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

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3.	제7조제4호에	따른	행위를
ج آ	한 자		

4. ~ 7. (생 략)

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

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

 행하지 아니한 자
- 2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
3. 제7조제4호·제5호 또는	제7
<u>호</u>	
4. ~ 7. (현행과 같음)	
제18조(과태료) ①	
<u>.</u>	
<u><삭 제></u>	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